

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(제37조의3 관련)

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지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지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.

방지지설명	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	
	배출시설	방지지설
1. 원심력집진시설(별표 4 제3호)	전류계	전류계
2. 세정집진시설(별표 4 제4호)	전류계	전류계
3. 여과집진시설(별표 4 제5호)	전류계	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
4. 전기집진시설(별표 4 제6호)	전류계	전류계
5. 흡수에 의한 시설(별표 4 제8호)	전류계	전류계, pH계
6. 흡착에 의한 시설(별표 4 제9호)	전류계	전류계, 차압계, 온도계

비고

제3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·제6호에 따른 흡착에 의한 시설 중 방지지설에 부착해야 하는 온도계와 제5호에 따른 흡수에 의한 시설 중 방지지설에 부착해야 하는 pH계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.